

집합투자계약 및 일괄신고서 변경 대비표

1. 대상 펀드 : 신영마라톤중소형주증권투자신탁(주식)
2. 변경 대상 : 집합투자계약, 일괄신고서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
3. 변경 사유 :

구분	주요 변경 사항
집합투자계약	① 종류형 I클래스 신설 ② 전자증권법 개정사항 반영
일괄신고서	① 종류형 I클래스 신설

4. 효력 발생(예정)일 : 2021년 5월 13일

5. 세부 변경 사항 :

◆ 집합투자계약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	① ~ ② <생략>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1. <생략> 12. <신설>	① ~ ② <생략>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~11. <생략> 12. <u>종류 I 수익증권 :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자를 포함)에 한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
제9조(수익권의 분할)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.	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, <u>수익증권으로 발행한다.</u>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전자등록한다.) 1.~11. <생략> 12. <신설>	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명식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증권법"이라 한다)에 따른 <u>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.</u> 1.~11. <생략> 12. <u>종류 I 수익증권</u>

<p>제14조(수익자 명부)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p> <p>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	<p>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 2 조 제 6 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(이하 "전자등록기관"이라 한다)에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전자등록기관은 관련법령·신탁계약·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전자등록기관은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의 성명,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.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</p> <p>⑥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</p>
<p>제35조(상환금 등의 지급)</p>	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
<p>제39조 (보수)</p>	<p>① ~ ② <생략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1. <생략> 12. <신설></p>	<p>① ~ ② <생략></p> <p>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p>1.~11. <생략> 12. 종류 I 수익증권</p> <p>가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60 나. 판매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3 다. 신탁업자보수율: 연 1000분의 02 라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1000분의 01</p>

제45조(집합투자 기구의 해지)	⑤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 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	⑤ 제 1 항 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는 해지사유, 해지일자, 상환금 등의 지 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 이지 등을 이용하여 <u>전자등록기관</u> 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.
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	⑨ 제 5 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⑩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 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 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	⑨ 제 5 항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,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 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⑩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·관리보고 서를 제공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 기관</u>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 으로 교부하여야 한다
부칙	<신설>	제 1 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, 적용한다.

◆ **일괄신고서 (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)**

항목	변경 전	변경 후
요약	운용전문인력 <u>생략</u>	운용전문인력 <u>업데이트</u>
본문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u><생략></u>	제1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: <u>DJ480</u>
	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<u><생략></u>	제2부 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: <u>DJ480</u>
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<u>생략</u>	제2부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. 운용전문인력 <u>업데이트</u>
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<u><생략></u>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: <u>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자를 포함)에 한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
	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<u><생략></u>	제2부 11. 매입,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. 매입 (2) 종류별 가입자격 I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: <u>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자를 포함)에 한하며,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

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<u><생략></u></p> <p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<생략></u></p>	<p>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: <u>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-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,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(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자를 포함)에 한하며, 판매수수료가 정</u> <u>구되지 않는 수익증권</u> <u>선취판매수수료 : 없음</u> <u>환매수수료 : 없음</u>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(수수료미징구-오프라인-기관) <u>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60</u> <u>판매회사보수율 : 0.03</u> <u>신탁업자보수율 : 0.02</u> <u>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</u> <u>총보수 : 0.66</u></p>
--	--